

2. 住宅分讓價 原價連動制施行指針中 改正指針

資料提供：建設交通部 住宅政策課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
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
택

2. 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
발조합을 포함한다)이 일반에게 분양
하는 주택(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
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연동
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서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개발사업으로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
물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
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나.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택지
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
이 아닌 경우

다. 국민주택기금등 공공주택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라. 건축공정이 80퍼센트에 달한 이
후에 분양하는 경우

③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
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지역으
로 하되, 기타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 충청

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에서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이 지침은 1995년 11월 11일부터 시행 한다.
 2.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 ----- -----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와 주택분양가격이 1989년 11월 9일 이전의 행정지도가격(25.7평 초과 평당 134만원, 25.7평 이하 평당 126.8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삭 제)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1.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u></p> <p><u>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u></p> <p><u>가.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인 경우</u></p> <p><u>나.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u></p> <p><u>다. 국민주택기금등 공공주택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u></p> <p><u>라. 건축공정이 80퍼센트에 달한 이후에 분양하는 경우</u></p>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